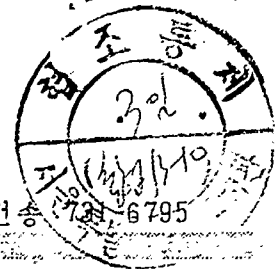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

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391-4 / 전송 6795

문서번호 주개 58533 - 2211

시행일자 1993.10.10.

(경유) (제 1 안)

수신 내부결재

참조

취급		시	장
보존		양 10	
주택국장	전결		
주택개량과장	장	법무담당관 심사팀 (고시안심사)	
개량2계장	장		
기안	정순구		협조

제목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, 개선계획 변경수립 및 고시

1. 건설부고시 제808호(89.12.30)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35호(91.1.3)로 개선계획수립된 우리시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사업시행과정에서 지구경계 불합리한 토지의 추가편입과 정밀재조사 결과 해당가구수의 축소 및 해당주민들의 건립규모 재조정요구에 대한 개선계획변경 요인이 있어

2. 관할구청장으로 부터 개선계획변경수립하고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제7차(93.9.9) 우리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결되어 93.9.21. 건설부에 보고하였기

3.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**임시주택법** 제3조 및 제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첨부 1. 고시안 1부.

2.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도면 1부.

3.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수립조서 1부.

(제 2 안)

수신 총무처장관

제목 관보게재 의뢰

1.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연명 :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개선계획 변경수립

원본대조필

다. 법적근거 :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및 제6조.
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, 제6조제5항 및 제12조제1호.

첨부 1.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 3 안)

수신 마포구청장

참조 주택과장

제목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개선계획 변경수립 통보

1. 주택58533 - 2464호(93.8.18)와 관련임.
2. 위호와 관련 귀구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개선계획 변경수립요청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그내용을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도서사본을 관련부서 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추진하기 바라며
3. 별첨 건설부의 지시사항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특히 안내문 작성전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결과를 제출하기 바람.

첨부 1. 고시문사본 1부.

2.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도면 1부.
3.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수립조서 1부.
4. 건설부 지시공문사본 1부.
5.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안내문 및 설문조사보고서식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 4 안)

수신 도시개발공사 사장

원본대조필

참조 재개발부장

제목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 통보

1. 귀사에서 시행중에 있는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수립 하였기 통보하니 적극 사업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지구내 해당주민에게 적절한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.

- 첨부 1. 고시문 사본1부.
2.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도면 1부.
3.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수립조서 1부. 끝.
- (제 5 안)

수신 수신처참조


제목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개선계획 변경수립 통보

1. 우리시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개선계획 변경수립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첨부 1. 고시문사본 1부.
2.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도면 1부.
3. 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수립조서 1부. 끝.

주 택 개 량 과 장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.

원본대조 

서울특별시고시 제 1773 호

제정 일자	1993. 10. 13	제 호	373 호
담당자	법제심사제정법무담당관		

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개선계획변경 수립

1. 건설부고시 제808호(89.12.30.)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435호(91.1.3.)로 개선계획수립된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4항, 제12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하고 같은법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선계획변경수립 하였기 같은법시행령제3조제2항 및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발과와 마포구 주택과 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93. 10. 13

서울특별시장

1. 지구의 명칭 : 염리주거환경개선지구
2. 위치 : 마포구 염리동 27 - 1 번지일대
3. 면적 : 기정 : 20,705. m² 변경 : 20,827.5 m² (증 122.50 m²)
4. 사업시행기간 : 당초 : 1991.1.1. - 93.12.31.
 변경 : 1991.1.1. - 94.12.31.
5. 사업의 시행자 :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사장
6.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변경내용
 - 가. 기존건축물 동수변경

원본대조필

단 위 : 동

기 정			기 정			비 고
계	유허가	무허가	계	유허가	무허가	
466	269	197	446	269	177	간 20

나. 토지이용계획 변경

기 정		변 경		증 감
구 분	면 적(㎡)	구 분	면 적(㎡)	
계		계	20,827.50	증 122.50
택 지	공 동 주 택 용 지	택 지	20,827.50	증 122.50
	근린생활시설용지			
	도 로			
	조 경 사 설			
공 시 용 공 설 지	어 린 이 놀 이 터			
	근린 공공시설			

다. 주택건설 계획변경

구 분	기 정	변 경	증 감
건립규모	6 ~ 8층 아파트 4동 999 세대	5 ~ 20층 아파트 6동 678 세대	감 321 세대
분양주택	전용면적 16평이하 : 635세대	전용면적 15평형: 107세대 18평형: 383 "	감 135 세대
임대주택	영구임대(전용면적 10평이하) : 364세대	공공임대(전용면적 8평형) : 178세대	감 186 세대

라. 사업비추경변경

단 위 : 백만원

구 분	가 정	변 경	증 감
계	34,799.80	46,733	증 11,933.10
보 상 비	16,376.1	21,750	증 5,373.90
공 사 비	18,433.80	24,983	증 6,559.20

마. 변경사유 : 지구계 일부 불합리한 토지의 추지지정 및 주택건립규모의 재조정.

일본대조

【 주거 환경 개선 계획 변경 수립 조서 】

1. 현 황

○ 위 치 : 마포구 염리동 27-1번지 일대

○ 면 적

구 분	기 정 (㎡)	변 경 후 (㎡)	증 감
계	20,705	20,827.5	증 122.5
사 유 지	17,426	17,545	증 119
국 공 유 지	3,279	3,282.5	증 3.5

○ 건물동수

구 분	기 정	변 경 후	증 감
건 물 동 수	466 동 (유희가 - 269 무허가 - 197)	446 동 (유희가 - 269 무허가 - 177)	감 20

○ 인 구 : 변경없음

○ 지정 도시계획 : 변경없음

2. 토지이용계획 변경

기 정		변 경 후		증 감
구 분	면 적 (㎡)	구 분	면 적 (㎡)	(면적㎡)
총 계	20,705	총 계	20,827.5	증 122.5
택 지	공 동 주 택 용 지	택 지	20,827.5	증 122.5
	근 리 생활 시설 용 지			
	도 로			
	조 경 시 설			
공공 시설 용지	어 린 이 놀 이 터	지		
	근 리 공 공 시 설			

3.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: 해당사항 없음

4. 주택건설계획 변경

○ 개량방법 : 공동주택및 부대복리시설 건립

○ 건립규모 변경내역

구 분	기 정	변 경 후	증 감
건립 규모	6 ~ 18층 아파트 4동 999세대	5 ~ 20층 아파트 6동 678세대	감 321세대
분양 주택	전용면적 16평이하 : 635세대	전용면적 15평형:107세대 전용면적 18평형:393세대	감 135세대
임대 주택	영구임대 (전용면적 10평이하): 364세대	공공임대(전용면적8평형) : 178세대	감 186세대

※ 기준일 이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기준일 이전 3개월 이상 거주하는
세입자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공급

5.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 계획 : 변경없음

6. 사업비 추정변경

(단위 : 백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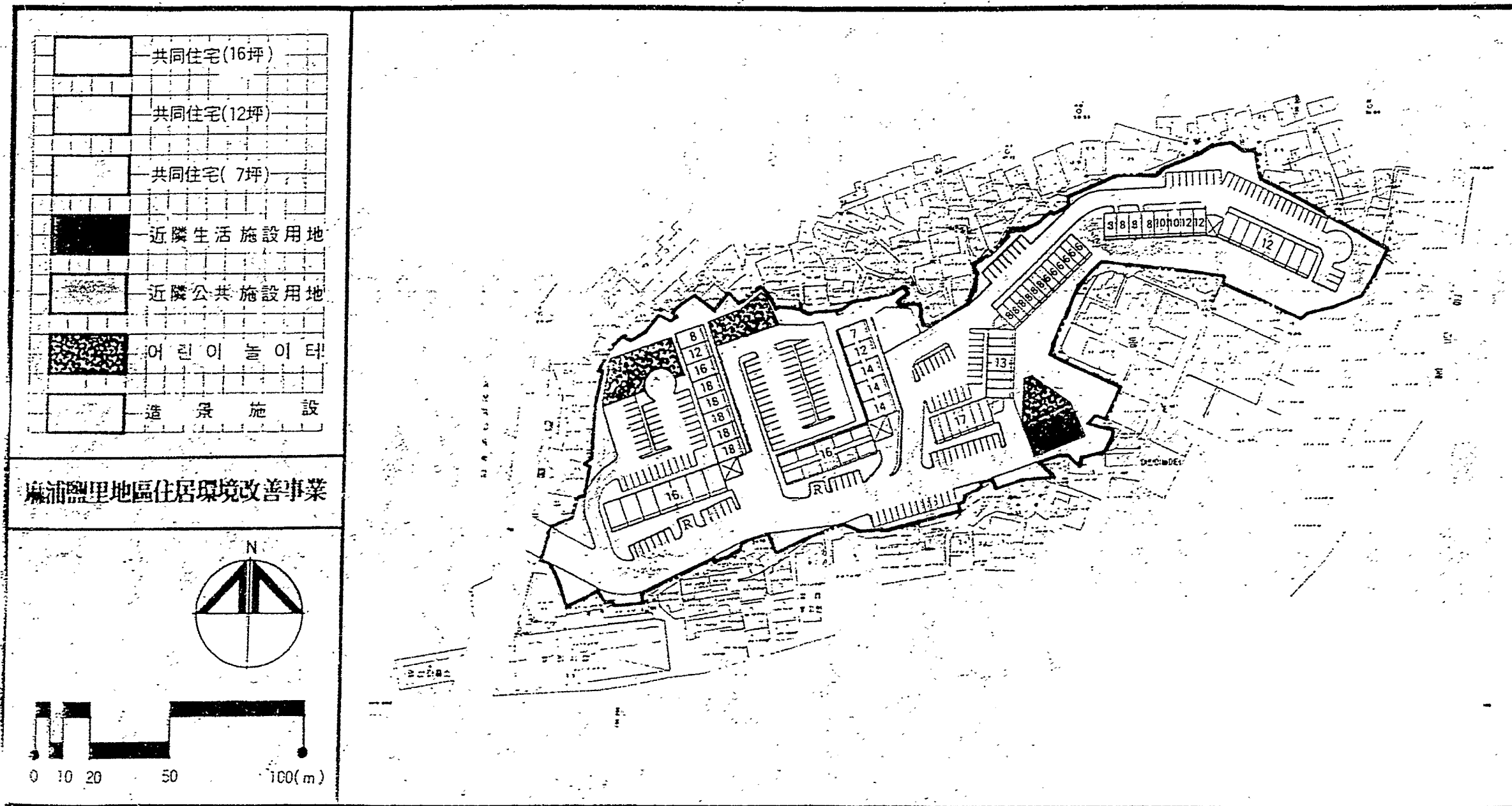
구 분	기 정	변 경 후	증 감
소 요 사업비	계	34,799.9	증 46,733
	보 상 비	16,376.1	증 21,750
	공 사 비	18,423.8	증 24,983

7. 변경사유 : 토지보상등 사업시행과정에서 정밀재조사 결과 해당 가구수의 축소및

해당 주민들의 건립규모 재조정 요구가 있어 이에 적합하도록 개선계획 변경코자 함.

원본대조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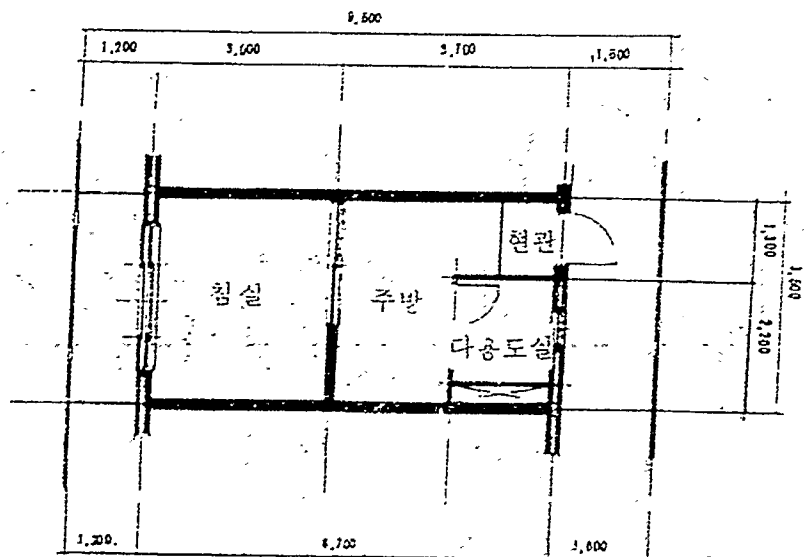
土地利用計劃圖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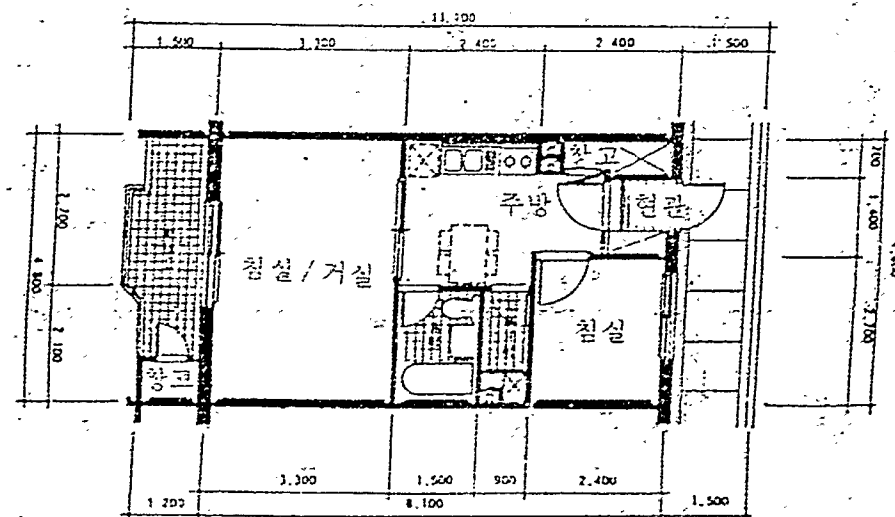
【 변경전 】

단위세대평면도(변경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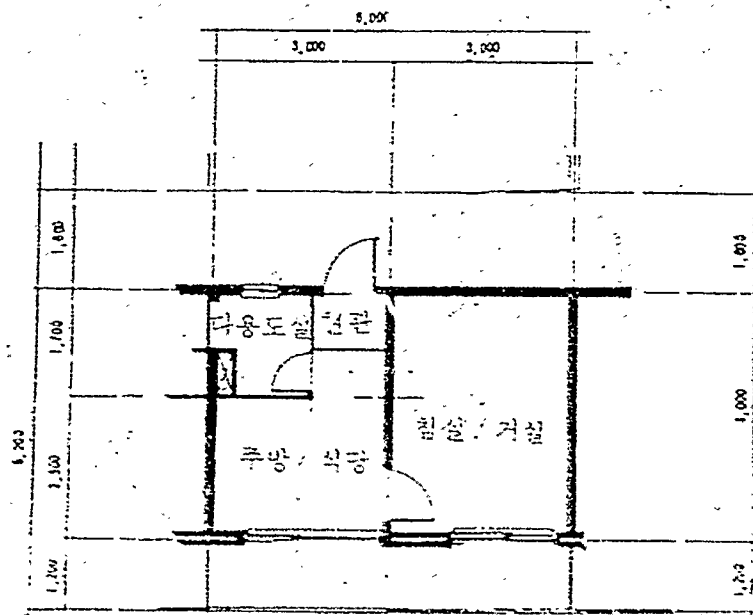
7坪(편복도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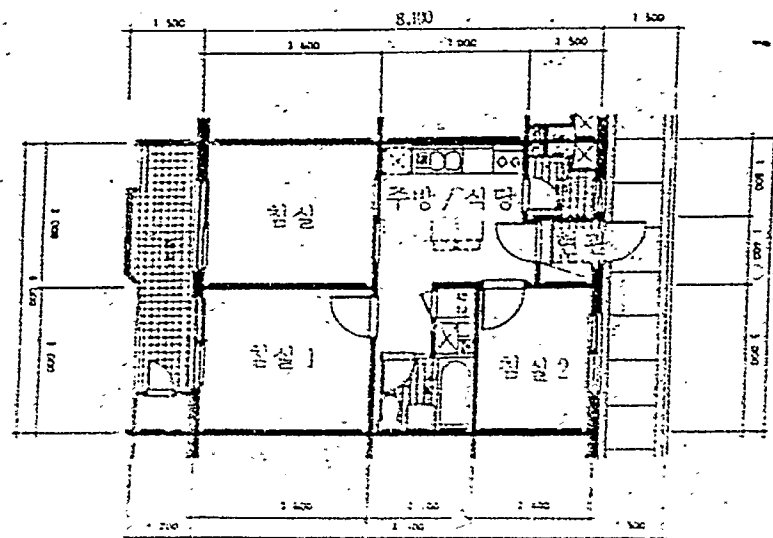
12坪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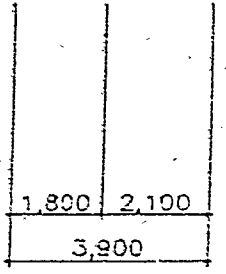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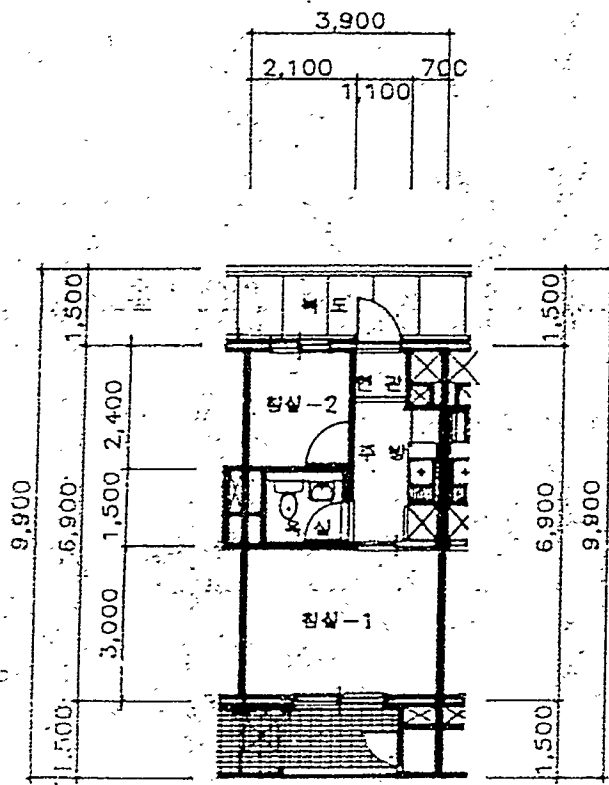
7坪(중복도형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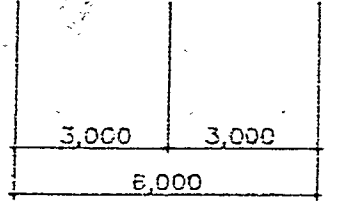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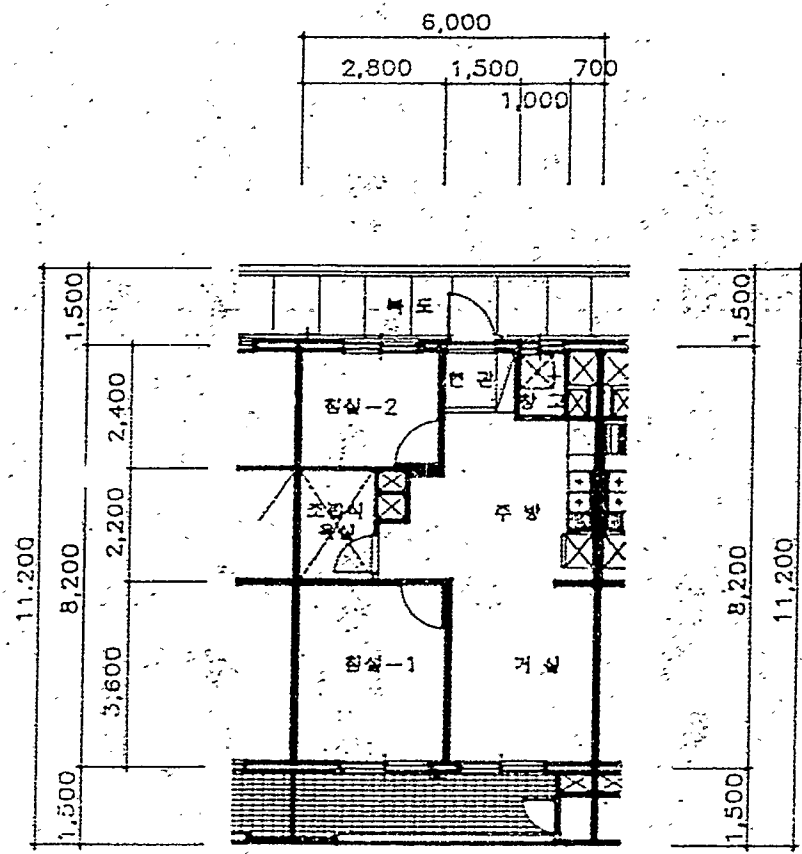
16坪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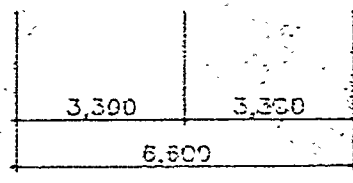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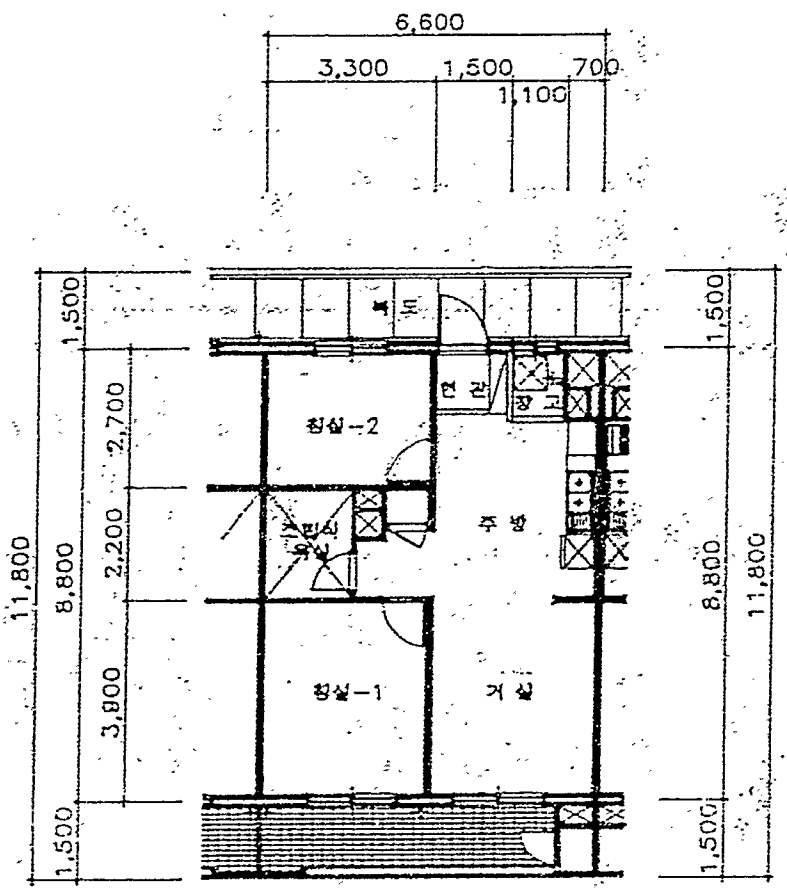
단위세대 평면도 (변경후)



变更前



变更后



变更前